부산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6. 12. 5.(월) ~ 12. 16.(금) [10일간]

○ 감사인원 : 14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인사·복무	예산·회계	입시·학사	산학·연구	시설	계
지적건수	13	16	12	11	7	59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인사·복무】		
1.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공 적부심사 부적정	○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영역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5명은 동일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같은 연도 2회(상, 하반기) 실시한 신규채용에 지원한 3명의 동일 논문에 대해 전공 적격심사를 상반되게 평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제5조의2,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 **주의(5명)**
2. 대학교원 상위직급 재계약 대상자 선정 부적정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대학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데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을 상위직급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 및 제16조,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7조 및 제28조,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제4조의3 및 제5조】**	○ **경고(4명)**
3. 국외파견 교수 등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 보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9개월까지 지연 제출하고, 회수대상 연구비의 회수 등 사후조치 미조치	○ **경고(3명)** ○ **주의(17명)** ○ **시정(회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제출	**【부산대학교 공무 국외여행과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8조, 부산대학교 공무국외여행과 연구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제8조 및 제8조】**	- 기 지급한 연구비 15,000천원을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4. 국외 파견교수 지원경비 未회수	○ 파견기간 중 조기귀국한 교수에 대해서는 지원된 연구비를 월할 계산하여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대상금액 1,250천원 미회수 **【부산대학교 공무 국외여행과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산대학교 공무국외여행과 연구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 주의(3명)** **○ 시정(회수)** - 조기귀국한 ○○○으로부터 지원금액 1,25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5. 私기업체 자문료 수령 부적정	○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승인받았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기관의 사외이사(非등기, 주주총회 非선임)가 아님을 인지한 이후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9개월 동안 합계 18,000천원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경고(1명)**
6.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직원 8명은 교육대학원 등에서 수업을 들었음에도 이와 중복되는 시간에 총 87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 합계 2,376,960원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경고(2명)** **○ 주의(6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합계 2,376,960원을 ○○○ 등 당사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통보** -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 등 8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7. 음주운전 교원 징계 처리 부적정	○ 음주운전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당시 처리 기준[감봉~정직(2015.12.29.시행)]'이 아닌 종전의 처리기준(견책~감봉)을 제시하여 '견책'으로 의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12.18.)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12.29.) 제2조 및 별표 1의3】**	○ **경고(1명)** ○ **주의(1명)**
8. 교육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구약식 및 기소유예' 통보된 3건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	○ **경고(1명)** ○ **주의(3명)**
9.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 대하여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지 않고 성과상여금 합계 562,040원 과다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부산대학교 2016년도 5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주의(2명)** ○ **시정(회수)** - 과다지급한 성과상여금 합계 562,04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0. 정직처분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정직처분을 받아 연가일수가 남아 있지 않은 직원 2명에게 연가보상비 합계 2,770,030원 지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7조】**	○ **주의(2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합계 2,770,03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 전임교원 未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 교원 41명은 소속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없이 총 217회에 걸쳐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부산대학교 공무 국외여행과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경고(2명)** ○ **주의(37명)**
12.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직원 5명에 대한	○ **경고(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부적정	평가단위별 평가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위원회는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ㅇ **주의(1명)**
13. 未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등	○ 직원 2명은 공가 및 병가 사용을 승인받고서 4회에 걸쳐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그 중 1명은 승인된 공가가 연가사용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아 연가보상비 73,050원 과다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ㅇ **경고(2명)** ㅇ **주의(1명)** ㅇ **시정(회수)** - 과다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73,050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예산·회계】		
14.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은 발전기금(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교원연구성과급 지원을 위해 부산대학교 기성회계로 3,501백만원 전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 운영규정 제17조】**	ㅇ **경고(3명)**
15.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지급 부적정	○ 노조 전임자 7명에게 근로 면제시간을 시간강사 강의 수업시수 한도 보다 많게는 6시간에서 적게는 3시간 초과하여 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합계 106,200천원 과다 지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81조, 부산대학교-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학교 분회 단체협약서 제13조, 부산대학교 강의료 지급규정 제8조】**	ㅇ **통보** - 근로시간면제자 수당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 바람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별도조치>** (대학정책과) ㅇ **통보**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일반 비정규교수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초과 인정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6. 관사 관리 부적정	○ 총장 및 사무국장 관사를 공실로 방치하면서 관리비 합계 10,426,290원을 기성회회계 등에서 집행 **【국유재산법 제3조】**	ㅇ **기관경고** ㅇ **통보** - 총장 및 사무국장 舊관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거나 활용이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하기 바람
17. 교재연구비 지급 부적정	○ 6개 특수대학원에서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강의료를 지급받는 교원에게 야간 강의에 대한 보상으로 교재연구비 합계 273,406천원 지급 **【고등교육법제15조, 국공립대학(교)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심사기획과-1877, 2011. 9. 15), 부산대학교 강의료 지급규정 제4조 및 5조】**	ㅇ **경고(9명)** ㅇ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특수대학원 교재연구비 명목의 합계 232,951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8. 계약학과 학사관리비 지급 부적정	○ 교원 4명은 대학으로부터 우수논문게재장려금을 수령하고도 같은 논문으로 경영대 국제 우수학술지 논문게재 포상금을 신청하여 합계 15,000천원 별도 수령 ○ 교수 27명에게 대학원 학사관리비에서 논문지도비 명목으로 합계 9,600천원 지급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제6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2014. 7. 1. 개정) 제27조】**	ㅇ **주의(2명)** ㅇ **시정(회수)** - 중복 지급한 논문게재 포상금 합계 15,000천원을 교수 ○○○ 등 4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ㅇ **경고(2명)** ㅇ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논문지도비 합계 9,600천원을 교수 ○○○ 등 27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9. 기성회(대학)회계 과태료 납부 부적정	○ 연구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합계 18,700천원, 소방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합계 5,600천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합계 4,420천원, 양산캠퍼스 부지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를 제때하지 하지 않아 부과받은 과태료 5,000천원 등을 기성회(대학)회계에서 납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24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 **기관경고**
20. 과운영비 집행 부적정	○ 과 형태로 유지하는 49개 보조기관이 과운영비에서 명절 휴가비 및 선물, 내부직원 전별금 명목으로 합계 196,778천원 집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관경고** ○ **통보** - 과운영비를 규정에 맞게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만 집행하기 바람
21. 공무국외여행시 정부항공운송 未의뢰	○ 교직원 39명은 미국 동문기업 방문 및 인턴십 체결, 유학생 유치 등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정부항공운송을 의뢰하지 않고 일반 여행사 운임을 적용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 **기관경고**
22. 총장실 운영비 집행 등 부적정	○ 총장실 운영비로 매월 5,000천원을 총장 비서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간담회 명목 등으로 총 539회, 합계 82,381천원 임의 집행 -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잔액 10,921천원 별도 보관·관리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부산대학교 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부산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경고(3명)**
23. 대학명의 계좌 예·결산 未편입 등 관리 부적정	○ 10개 본부 및 지원기관에서 대학명의 19개 계좌 합계 3,558,655천원을 관련회계 예·결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관리 ○ 본부 및 산학협력단 등 11개 소속기관에서 장	○ **기관경고** ○ **시정** -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관리되는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27개 계좌 합계 144,201천원을 휴면계좌로 방치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3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제10조】**	19개 계좌 합계 3,558,655,789원을 관련회계로 편입조치하고, - 대학 명의 27개 휴면계좌는 해지하고, 잔액 합계 144,201,095원은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24. 언어교육원 자기소관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	○ 자기소관 업무인 3개 교재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언어교육원장 ○○○에게 합계 5,600천원 지급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규정 제2조】**	**○ 경고(2명)** **○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담당자에게 지급된 교재개발비 합계 5,600천원을 언어교육원장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25. 여비 지급 부적정	○ 교원 16명은 동일 출장에 대한 여비를 산단회계, 기성(대학)회계에서 이중으로 지급받아 합계 2,077,790원 부당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 기관경고** **○ 시정(회수)** -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2,077,790원을 ○○○ 등 관련자 16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26. 대학생활원 원생지도비 등 부당 수령	○ 대학생활원 지도교수 4명은 원생실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원생지도 조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원생지도비 등 합계 1,300천원 수령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규정 제10조 및 대학생활원 지도부 지도비 및 수당 지급 지침」**	**○ 주의(4명)** **○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원생지도비 등 합계 1,300천원을 교수 ○○○ 등 관련자4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27. 지출원인행위 처리 부적정	○ 교장 2명은 직무대리자 지정 권한이 없는데도 본인들의 휴가, 출장기간 동안 교감을 직무대리자로 임의 지정하여 지출원인행위 총 265건 합계 408,787천원을 교감이 처리	**○ 경고(1명)** **○ 주의(1명)**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2조 및 직무대리규정 제2조 및 제5조】	- 부설학교장이 휴가,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기 바람
28. 명시이월 예산처리 부적정	○ 2014회계연도에 편성된 학교급식운영사업비 등 3건 114,436천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0조】**	ㅇ **기관경고** ㅇ **통보** - 명시이월이 필요한 경우 대상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바람
29.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부적정	○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합계 4,227,191점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4,180,000원)으로 환급받아 행정실 비품 및 접대용 차 구입비로 집행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6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기관경고** ㅇ **시정(회수)** - 법인카드 인센티브 환급금 사용 잔액 155,640원을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ㅇ **통보** - 법인카드 사용 계약 체결 시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의 환급 관련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바람
【입시·학사】		
30. 전임교원 책임시수 미준수	○ 전임교원 7명은 개설강좌 폐강 등의 사유로 주당 책임시수보다 적게는 1.8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부족하게 수업을 담당하고도 다음 2개 학기 이내 보충 미실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부산대학교 제7조 및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2조】**	ㅇ **경고(7명)**
31. 휴·결강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부당 수령	○ 교원 245명은 출장 및 연가 등으로 결강한 합계 1,311.5시간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않고, 이중 37명은 미보강 시수 213.5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6,405천원 부당 수령	ㅇ **경고(42명)** ㅇ **주의(187명)** ㅇ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초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4조】	과강의료 합계 5,52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개선** - 보강신청에 따른 보강 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학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람
32. 교수계획표 작성·공고 미이행	○ 교원 772명은 총 1,386개 교과목에 대한 교수계획표를 작성하여 공고하지 않음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3조】**	**○ 기관경고**
33.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부적정	○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해양학과에 응시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0점'처리에 해당하는 외부 수상실적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0점' 처리 하지 아니하고 최종 합격 처리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주의(12명)**
34.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평생교육원은 총 1,029개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未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42(2013.04.18.), 1972(2014.03.26.)]】**	**○ 주의(11명)** **<별도조치>** (평생학습정책과) **○ 통보** -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35.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 평생교육원은 86개 민간자격과정을 전단지 등에 광고하면서 민간자격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未이행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5】**	**○ 주의(11명)**
36. 기본이수과목 명칭 변경 개설	○ 2013학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	**○ 기관경고**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부적정	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총장의 결재 없이 13개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 제12조】**	**<별도조치>** (교원복지연수과) **○ 통보** - 기본이수과목 명칭 변경 개설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37. 교직과정이수 예정자 선발 부적정	○ 인성·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만으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211명 선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및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지침】**	**○ 경고(6명)**
38. 성적평가 근거자료 보관 규정 미비 및 미보존	○ 학업성적 평가의 근거서류인 학생 출석부, 시험 답안지 및 과제물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내부 규정 未마련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총 4,199개 교과목에 대한 시험 답안지 및 과제물 평가자료 등 성적평가 근거자료 未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기관경고** **○ 개선** - 출석부, 답안지 등 성적평가 관련 기록물의 자체보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39.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 교수 89명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 143명(누적인원)의 해당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하지 않고 학점 부여 -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F' 처리하였다면 직전학기 성적이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학생 6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합계 10,728,500원 지급 **【부산대학교 학칙 제58조, 2013 ~ 2016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안내,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 경고(81명)** **○ 통보** - ○○○ 등 학생 72명(누적인원)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 **<별도조치>** (한국장학재단) **○ 통보** - 기준 미충족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40. 성적 열람 및 정정신청 기회 未부여	○ 교수 40명은 63개 교과목에서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이후에 성적을 입력하여 학생들의 성적 열람 및 정정신청 기회 未부여	**○ 경고(34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1조】	
41. 출석부 부당 재작성	○ 사학과 조교는 2014학년도 1학기 성적정정 신청 시 '동양근현대사' 교과목의 출석부를 해당 교과를 담당한 시간강사 ○○○으로부터 제출 받고도, 이를 분실한 후 최종 제출기한이 다가오자 동 과목의 출석부를 임의 재작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1조】**	**○ 경고(1명)**
【산학·연구】		
42. 연구개발비 집행 부당	○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장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계약직원을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연구개발비(직접비)에서 인건비 103,025천원 집행 - 또한, 연구개발비(간접비)에서 계약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5,868천원* 지출 후 되돌려 받아 추석 선물을 구입하는 등 합계 47,517천원 목적 외 사용 * 선물 구입을 담당 직원 1명은 선물 구입 후 잔액 848천원 사적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2 및 제6항, 부산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제7조】**	**○ 중징계(1명)** **○ 경징계(1명)** **○ 경고(1명)** **○ 시정(회수)** - 목적외 사용한 간접비 등 합계 53,385천원(47,517천원+5,868천원)을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별도조치>**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통보**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계약직) 인건비 합계 103,025,720원을 연구개발비(직접비)에서 집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43. 기금교수 임용 및 연구개발비 (간접비) 집행 부적정	○ 기계기술연구원은 연구원 간접비에서 연 10,000천원을 기금교수 인건비로 마련하여 ㈜○○○에서 근무한 ○○○을 연구원 기금교수로 임용되도록 함 ※ 임용시(2013.3.~2015.2) 기금교수 인건비 : ㈜○○○에서 연간 20,000천원, 연구원 간접비에서 10,000천원 합계 30,000천원 조성 ※ 재임용시(2015.3.~2017.2) 기금교수 인건비 : 1차년도는 위와 같이 30,000천원 조성, 2차년도는 연구원 간접비에서만 10,000천원 조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산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 제2조, 제10조, 제11조】**	○ **경고(2명)**
44. 연구(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기계기술연구원과 도시문제연구소는 연구(용역) 과제 총 107건(금액 229,575천원)을 계약하면서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체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경고(1명)** ○ **주의(1명)** ○ **통보** - 연구(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체결하기 바람
45. 겸직 未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 조교 9명은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16개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연구수당 합계 30,723천원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기관주의**
46. 개인명의 특허 등 출원·등록 부적정	○ 교수 21명은 합계 37건의 특허 등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출원·등록 **【발명진흥법 제10조,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 **주의(21명)** ○ **시정** - 교수 ○○○ 등 21명의 개인명의로 등록된 37건의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절차를 취하기 바람
4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교수 개인별 간접비 수주실적에 따라 산정(개인별 간접비×평가등급별 지급률)하여 교수 연인원 1,286명에게 개인별로 연 62천원에서 31,903천원까지 과도하게 차등 지급	○ **경고(16명)** ○ **개선** - 성과평가시 공동 평가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 51개 연구소에서 평가 B등급 교수에게 간접비 수주실적이 높다는 이유로 A등급 교수보다 성과급을 더 지급 - 3개 연구소는 교수 6명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본부 승인 금액보다 합계 6,584천원 초과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원칙 종합안내('12.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준을 적용하거나 평가등급별 지급기준액을 통일하는 등 성과 평가방법 및 성과급 산정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시정(회수)** - 초과 지급한 성과급 합계 6,584천원을 교수 ○○○ 등 관련자 6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48.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未제출 등 부적정	○ 교수 12명은 교내 연구과제 최종 결과물을 제출기한으로부터 18개월에서 45개월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未제출하고, 반납 고지된 연구비 합계 98,000천원도 未반납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제4조 및 제9조】**	**○ 경고(11명)** **○ 주의(1명)** **○ 시정(회수)** -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따라 반납 고지한 연구비 합계 98,000천원을 ○○○ 등 관련자 12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49. 연구소 간접비 집행 관리·감독 태만 및 횡령	○ 연구소 소장 3명은 연구소 계약직원에게 본인 도장을 맡겨 간접비를 지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고, - 해당 직원은 간접비 관리계좌에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52,891천원 횡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부산대학교 간접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 경징계(2명)** **○ 경고(1명)** **○ 주의(3명)** **○ 시정(회수)** - 횡령한 간접비 합계 52,891천원을 사무원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통보(문책)** - 연구소 간접비를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횡령한 사무원 ○○○을 자체규정 등에 따라 문책(중징계)하기 바람 **<별도조치>** **○ 고발** - 사무원 ○○○을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50. 연구소 간접비 논문장려금 지급 부적정	○ 2개 연구시설은 소속 교원 18명이 대학회계(구 기성회계)에서 우수논문게재장려금 합계 44,100천원을 지급 받았는데도, 같은 논문에 대해 연구소 간접비에서 논문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31,600천원 별도 지급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제6조, 부산대학교 우수논문게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 주의(4명)** **○ 시정(회수)** - 연구소 간접비에서 별도 지급된 논문장려금 합계 31,600천원을 ○○○ 등 관련자 18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51. 계약학과 확인절차 이행 부적정	○ 28개(年합계) 계약학과는 재학생 합계 294명(年인원)에 대해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한 산업체 재직 현황 未확인하거나 - 산업체 연업체수 317개의 산업체 부담금 합계 1,246,977천원에 대해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를 통한 당해 산업체의 직접 부담여부 未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제8조, 제10조, 제17조】**	**○ 기관경고** **○ 통보** - 계약학과가 설립 취지·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학과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 절차 등을 숙지토록 조치하고, 확인절차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52. 교수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 48개 연구소는 연구소장, 기획부장 등 교수 381명(年인원)에게 보직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직수행경비 합계 1,416,111천원을 간접비에서 지급 ○ 2개 이상 보직자는 1개 보직에 대한 수당만	**○ 기관경고** **○ 통보** - 연구소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수 보직수행경비는 지급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지급해야 함에도 2개의 보직을 갖고 있는 교수 15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48,843천원 추가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부산대학교 간접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부산대학교 교수 보직수행경비 집행계획】**	을 중단하고, 자체 지침상의 관련 규정도 폐기하기 바람 - 2개 이상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행경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시정(회수)** - 2개 보직에 대해 지급한 보직수행경비 중 금액이 적은 보직수행경비 합계 47,843천원을 교수 ○○○ 등 관련자 15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시설】		
53. 시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 2건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4건으로 분할하여 각각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	**○ 주의(7명)**
54. 시설공사 법정경비 未정산	○ 6건의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실제 해당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비 합계 8,044천원 未정산(감액) ○ 4건 공사의 도급금액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 합계 2,436천원을 시공업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未정산(감액) ○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급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5,460천원 중 1,980천원만 지출하였는데도 3,480천원 未정산(감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항,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34조의4】**	**○ 주의(10명)** **○ 시정(회수)** - 정산(감액) 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계 13,960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55. 건설폐기물	○ 5건의 공사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	**○ 주의(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처리 부적정	하지 않고, 6건의 공사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폐기물처리비 합계 7,240천원 未정산(감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ㅇ **시정(회수)** - 정산(감액)하지 아니한 6건 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 합계 7,240천원을 해당 업체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56. 제2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 제2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계약금액 40,347천원)"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량철골천장마감재 재설치 공사에만 적용하여야 할 경량철골천장틀 손실보수비를 신설 경량철골천장틀 부분에도 적용 ○ 동 설계도서를 기초로 공사계약 체결하고, 건설업체에서 홀바닥 재료를 고가 제품으로 임의 변경하여 공사비 합계27,125천원 낭비 - 또한, 준공검사시 옥외 계단실 우레탄 방수층의 두께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해당 공사비 1,825천원 未정산(감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5】**	ㅇ **경고(1명)** ㅇ **주의(3명)** ㅇ **시정(회수)** - 정산(감액)하지 아니한 공사비 합계 1,825천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57.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 3건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시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합계 11,760천원 未정산(감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ㅇ **경고(3명)** ㅇ **주의(4명)** ㅇ **시정(회수)** - 정산(감액)하지 아니한 3건 공사비 합계 11,760천원을 해당업체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58.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 2건 공사 설계 시 물량 과다산출 등으로 합계 142,040천원의 공사비 과잉 계상	ㅇ **경고(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 **주의(2명)** ○ **시정(회수)** - 과잉 계상된 2건 공사비 합계 142,040천원을 시공업체들로부터 감액 또는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59. 공간초과사용료 未납부 등 관리 부적정	○ 18개 사용주체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간(면적합계 1,996.49㎡)에 부과된 초과사용료 합계 69,878,240원 未납부 **【부산대학교 공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23조】**	○ **주의(16명)** ○ **시정(회수)** - 납부하지 않은 시설 공간 초과사용료 합계 69,878,240원을 사용주체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